



2018년도 임금 협약서

2018. 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

전 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본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진흥재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2장 임 금

제2조(임금의 원칙) ① 진흥재단은 제1조에 따른 임금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제 규정과 방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4조(2018년도 임금인상) ① 진흥재단은 조합원의 연봉에서 1,284,120원을 직급에 차등 없이 정액 인상하여 지급한다. 단, 2018년 승진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 까지의 임금은 정액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8년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은 급여지급요령 개정에 따른 인상률 1.82%와 정액 인상분의 차액을 인상한다.

② 임금인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로 구분한다.

나. 기본연봉과 연동되는 항목은 성과연봉, 성과인센티브,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③ 임금총액 대비 성과인센티브 비중은 제반규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수당은 전년수준보다 저하되지 않게 한다.

제5조(기타 복리후생)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되, 가용 재원이 확보된 경우 진흥재단은 이를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에 사용한다.

부 칙

제1조(명칭변경) 이 협약은 진흥재단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1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유지된다.

제3조(협약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5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제반 노동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1-13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8. 11. 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

이 사 장 양 성 광



위 원 장 이 희 욱 이희욱